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316
----------	-------

발의연월일 : 2026. 4. 14.

발 의 자 : 김영진·허영·이연희
이해식·차지호·김윤
안태준·윤종균·한민수
소병훈·조승래·서삼석
이정헌·염태영·진성준
권칠승 의원(16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부조달계약 과정에서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하거나 시정하기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이의신청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분쟁조정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국가계약 분쟁조정은 소송 대비 신속·저비용의 분쟁해결로 중소기업의 권리구제에 효과적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조정한 불수용, 불필요한 절차규정 등으로 인하여 조달기업의 권리구제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음.

이에 국가계약 분쟁의 권리구제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분쟁해결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국가계약 관련 분쟁의 조정 청구를 위한 이의신청 필요적 전치주의를 폐지하고, 발주기관의 수용성 제고를 위하여 재정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을 위한 조사권을 부여함(안 제28조, 제28조의2 및 제31조의3).
- 나.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부당한 특약등에 대한 심사 권한을 부여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 수를 30명으로 확대하여 풀(Pool)제로 운영하는 한편, 소위원회를 두어 소액 조정·재정 신청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제31조의4 및 제31조의5).
- 다. 조정·재정의 절차 및 효력을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재정신청된 분쟁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조정예회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제3항, 제31조 및 제31조의2).
- 라. 조정·재정의 당사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중소조달기업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함(안 제31조의6).
- 마.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21418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8조제1항제5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4. 제9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및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과 관련된 사항
6. 제19조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된 사항
7. 제26조에 따른 지체상금과 관련된 사항
8. 증거조사 또는 검증이 필요한 금전적 분쟁으로서 개산계약의 정산, 지연배상금, 선금 반환, 기성대가와 관련된 사항

제28조의2를 제28조의3으로 하고,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8조의3(중전의 제28조의2)제2항제1호 중 “조정”을 “조정 또는 재정”으로 한다.

제28조의2(조정·재정의 신청) ①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에 조정(調停) 또는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28조제3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2. 제28조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조치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 통지기한이 지난 날부터 30일
 3. 제28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50일 또는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은 제28조제1항제4호·제6호·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분쟁에 대하여만 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재정신청된 분쟁을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재정신청을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7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제1항 중 “심사·조정”을 “조정·재정하고, 부당한 특약등에 대하여 심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5명”을 “30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심사·조정”을 “조정·재정 또는 심사”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까지”를 “제9항까지”로, “위원회의 운영 및 심사·조정 절차와 그 밖에”를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로 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⑨ 위원회는 조정·재정 신청된 분쟁과 부당한 특약등의 심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0조의 제목 중 “계약절차”를 “계약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심사·조정”을 “조정 또는 재정”으로, “청구인”을 “신청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고려하여”를 “신청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로, “조정”을 “조정 또는 재정”으로, “계약체결”을 “계약체결 또는 이행”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의 제목 “(심사·조정)”을 “(조정 절차 및 효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심사·조정청구를”을 “조정신청을”로, “심사·조정하여야”를 “조정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심사·조정”을 “조정”으로, “청구인”을 각각 “신청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청구인”을 “신청인”으로 한다.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재정의 절차 및 효력) ①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80일 이내에 재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은 신청인과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문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재정의 대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철회한 경우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③ 신청인 또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효의 중단 및 제소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재정의 신청을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④ 재정의 의견진술 절차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31조의3(위원회의 조사권 등) ① 위원회는 분쟁의 재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 또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하 이 조에서 “재정당사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재정당사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질문 및 진술 청취
2. 감정인·관계 전문기관의 출석 및 감정·진단·시험 요구
3. 분쟁과 관계있는 문서 또는 물건의 열람·복사·제출 요구 및 유치(留置)
4. 분쟁과 관계있는 장소의 출입·조사

② 재정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등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직권으로 제1항에 따른 조사 등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재정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정신청 전에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확보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을 신청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조사 등의 범위·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4(소액 조정·재정 등의 심사) ① 위원장은 분쟁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분쟁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조정·재정 신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에서 조정 또는 재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조정 또는 재정은 위원회의 조정 또는 재정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조정·재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5(부당한 특약등의 심사)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조건 또는 특약이 부당한 특약등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계약조건 또는 특약이 부당한 특약등에 해당하

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심사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계약조건 또는 특약이 부당한 특약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31조의6(조정·재정의 대리인) ① 조정·재정의 신청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제3호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청자인 법인의 임직원

3. 변호사

4.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②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③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8조의2에 따라 조정·재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위원회에 변호사를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2.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 ⑤ 위원회는 제4항의 신청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⑥ 국선대리인의 자격, 관리 등 국선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7(전담부서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정을 위한 재심 청구사건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정을 위한 재심 청구사건은 이 법에 따른 조정 신청사건으로 본다.

제3조(조정·재정의 신청 및 대리인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 및 제31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정·재정을 신청하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

5. (생략)

②·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른 조치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調停)을 위한 재심(再審)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약의 정산, 지연배상금, 선금 반환, 기성대가와 관련된 사항

9. (현행 제5호와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삭제>

제28조의2(조정·재정의 신청) ①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에 조정(調停) 또는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28조제3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2. 제28조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조치 결과를 통지받지 못

한 경우: 통지기한이 지난 날
부터 30일

3. 제28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28조제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5
0일 또는 있음을 안 날부터 3
0일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은
제28조제1항제4호·제6호·제7
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분쟁
에 대하여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정신청된 분쟁
을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적합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
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
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재
정신청을 조정에 회부하는 경
우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7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의2(분쟁해결방법의 합의)

- ① (생략)
-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해결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제28조의3(분쟁해결방법의 합의)

- ① (현행과 같음)
- ② -----

나 중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정한다.

1.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

2. (생략)

제29조(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심사·
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재정경
제부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
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
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 ⑥ (생략)

⑦ 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사·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신설>

-----.

1. -----
-----조정 또는 재정

2. (현행과 같음)

제29조(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① -----
-----조정·
재정하고, 부당한 특약등에 대
하여 심사-----

--.

② -----
-----30명-----
-----.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

조정·재정 또는 심사-----.

⑧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6
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⑨ 위원회는 조정·재정 신청
된 분쟁과 부당한 특약등의 심
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

⑧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심사·조정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30조(계약절차의 중지) ① 위원
회는 심사·조정을 시작하는
경우 청구인과 해당 중앙관서
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면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 입찰 절차를 연기
하거나 계약체결을 중지할 것
을 명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31조(심사·조정) ①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
조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50일

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3
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⑩ -----제9항까지-----
-----위원회 및 소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

제30조(계약절차 등의 중지) ①
-----조정 또는 재정-----
-----신청인-----

-----.

② -----신청인의 신청 또
는 직권으로-----
-----조정 또는 재정

-----계약체결 또는 이행-----
-----. 이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의견을 요
청할 수 있다.

제31조(조정의 절차 및 효력) ①
-----조정신청
을-----

<신 설>

우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③ 신청인 또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효의 중단 및 제소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재정의 신청을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④ 재정의 의견진술 절차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31조의3(위원회의 조사권 등)

① 위원회는 분쟁의 재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 또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하 이 조에서 “재정당사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재정당사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질문 및 진술 청취
2. 감정인·관계 전문기관의 출석 및 감정·진단·시험 요구
3. 분쟁과 관계있는 문서 또는 물건의 열람·복사·제출 요

구 및 유치(留置)

4. 분쟁과 관계있는 장소의 출입·조사

② 재정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등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직권으로 제1항에 따른 조사 등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재정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정신청 전에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확보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을 신청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조사 등의 범위·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1조의4(소액 조정·재정 등의 심사) ① 위원장은 분쟁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분쟁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조정·재정 신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에서 조

<신 설>

정 또는 재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조정 또는 재정은 위원회의 조정 또는 재정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조정·재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5(부당한 특약등의 심사)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조건 또는 특약이 부당한 특약등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계약조건 또는 특약이 부당한 특약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심사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

<신 설>

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계약조건 또는 특약이 부당한 특약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31조의6(조정·재정의 대리인)

① 조정·재정의 신청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제3호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청자인 법인의 임직원
3. 변호사
4.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②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③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의 취하

는 특별한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8조의2에 따라 조정·재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위원회에 변호사를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2.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⑤ 위원회는 제4항의 신청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⑥ 국선대리인의 자격, 관리 등 국선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7(전담부서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전담부서를

<신 설>

설치하고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의 구성·운영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